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5443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자	경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352호)	김장겸의원	2024. 6. 12.	<p>가.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7.1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p> <p>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9.3.) 상정/축조심사</p> <p>다.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8.27.) 상정</p> <p>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9.9.) 상정</p> <p>마.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축조심사</p> <p>바.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372호)	조승환의원	2024. 7. 30.	<p>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2024.11.20.) 상정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소위원회부</p> <p>나.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2.25.) 상정/축조심사</p> <p>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p> <p>라.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403호)	신동욱의원	2024. 7. 30.	<p>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2024.11.20.) 상정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소위원회부</p> <p>나.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2.25.) 상정/축조심사</p> <p>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p> <p>라.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p>

<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475호)</p>	<p>조인 철의원</p>	<p>2024. 8. 1.</p>	<p>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2024.11.20.) 상정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소위원회부 나.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2.25.) 상정/축조심사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 라.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p>
<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842호)</p>	<p>이정현의원</p>	<p>2024. 8. 14.</p>	<p>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2024.11.20.) 상정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소위원회부 나.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2.25.) 상정/축조심사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 라.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p>

<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370호)</p>	<p>김미애의원</p>	<p>2024. 8. 29.</p>	<p>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2024.11.2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나.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8.27.) 상정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9.9.) 상정 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축조심사 마.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p>
<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389호)</p>	<p>최기상의원</p>	<p>2024. 8. 29.</p>	<p>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2024.11.2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나.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2.25.) 상정/축조심사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 라.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p>
<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4560호)</p>	<p>전현희의원</p>	<p>2024. 10. 4.</p>	<p>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2024.11.2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나.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2.25.)</p>

			<p>상정/축조심사</p> <p>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p> <p>라.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4819호)	조국의원	2024. 10. 22.	<p>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12.1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p> <p>나.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2.25.) 상정/축조심사</p> <p>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p> <p>라.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8271호)	김문수의원	2025. 2. 19.	<p>가.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p> <p>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p> <p>다.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8838호)	김예지의원	2025. 3. 12.	<p>가.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p> <p>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8.)</p>

			상정 다.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 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282호)	고동진의원	2025. 3. 24.	가.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6.)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 위회부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 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 다.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 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332호)	양부남의원	2025. 3. 25.	가.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6.) 상정/제안 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 회부 나.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 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8.27.) 상정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 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9.9.) 상정 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 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축조심사 마.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 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704호)	이종배의원	2025. 4. 10.	가.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6.)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 위회부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 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8.)

			<p>상정</p> <p>다.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0630호)	조인철의원	2025. 5. 29.	<p>가.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6.) 상정/제안 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p> <p>나.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8.27.) 상정</p> <p>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9.9.) 상정</p> <p>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축조심사</p> <p>마.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004호)	전용기의원	2025. 8. 6.	<p>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8.27.)</p> <p>나.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8.27.) 상정</p> <p>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9.9.) 상정</p> <p>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축조심사</p> <p>마.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p>
정보통신망	한정애의원	2025. 8. 26.	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378호)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9.8.)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9.9.) 상정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축조심사 라.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388호)	김우영 의원	2025. 8. 26.	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9.8.)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9.9.) 상정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축조심사 라.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605호)	정일영 의원	2025. 9. 2.	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1.14.)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축조심사 다.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814호)	박주민 의원	2025. 9. 9.	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2025.11.17.) 상정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소위원회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

			다.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818호)	조인철의원	2025. 9. 9.	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1.14.)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축조심사 다.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936호)	한민수의원	2025. 9. 12.	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1.14.)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축조심사 다.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3684호)	최민희의원	2025. 10. 23.	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1.14.)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축조심사 다.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3698호)	윤준병의원	2025. 10. 24.	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1.14.)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축조심사 다.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주희의원	2025. 11. 12.	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4169호)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1.17.)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축조심사 다.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4522호)	이해민의원	2025. 11. 25.	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2.8.)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축조심사 다.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4576호)	이용우의원	2025. 11. 26.	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2.8.)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축조심사 다.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 (제2200029호)	유미숙 외 51,408인	2024. 8. 19.	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2024.11.2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나.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2.25.) 상정/축조심사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 라.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본회의불부의)

가.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2. 10.)에서 위 27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나.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2.

10.)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의결한 27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단은 행정 심의에 의한 제한적 제재에 불과함. 그러한 행정 심의마저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본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이하 “가해자”라 함)

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와 사회 공동체 관점에서의 징벌적 요소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함.

이를 위해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로 인한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한 증명되는 손해액 외에 증명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천만원까지의 법정손해액 부과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다만,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청구하는 입 막음 성격의 이른바 봉쇄소송을 차단하기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봉쇄소송임을 주장할 경우 중간판결로 제기된 소송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형사유죄판결, 손해 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에 취득한 재물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추가함.

이용자 규모가 특별히 크고 정보의 생산·유포 방식이 고도화된 대 규모 정보통신망의 등장으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이 빨라지고 피해 규모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수단의 도입이 매우 절실해짐.

본 개정안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처럼, 대규

모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운영하는 이른바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불법·허위 정보 삭제와 투명성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는 법체계를 도입하였음.

정보에 대한 fact-checking(사실확인) 활동을 하는 언론기관이나 인권단체 등을 지원하여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8까지 및 제44조의20부터 제44조의27까지 신설 등).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용자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등).
- 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추가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 다. 허위조작정보의 요건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함(안 제44조의7제2항 신설).
-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제44조의7제1항의 불법정보 또는 허위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게재자 가운데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제44조의7제1항의 불법정보 또는 제2항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안 제44조의10 신설).

마.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의 적용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안 제44조의12 신설).

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개편하고 분쟁조정 절차, 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44조의18부터 제44조의23 신설).

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제44조의7제1항의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형사유죄 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 신설).

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함(제70조제1항 삭제 및 안 제70조제2항부터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을 “직접 제공하거나 게재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를”으로 한다.

3의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의3. “게재자”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제44조의6제1항 중 “주장하는 자는”을 “주장하는 자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으로,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로, “정보(민·형사상)”을 “정보(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으로 한다.

제44조의7의 제목 중 “불법정보의”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를”을 “불법정보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거짓의 사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제44조의7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를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1호 중 “제2항 및 제3항에”를 각각 “제3항 및 제4항에”로 한다.

- ② 누구든지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

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제44조의10을 제44조의18로 하고, 제44조의18(종전의 제44조의10)의 제목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와”를 “정보, 제44조의12제3항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 결정과”로, “5명”을 “9명 이상 20명”으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를 “분쟁조정부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를 “분쟁조정부의”로 한다.

② 제1항의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위원은 각각 위원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언론사의 취재·보도·제작 업무(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취재·보도·제작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정보통신망 또는 언론에 관하여 학식이나 전문성이 인정

되는 사람

제5장에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0(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 유통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을 말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계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계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제44조의7제1항의 불법정보 또는 제2항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2.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3.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원고 외의 자가 입은 피해도 포함한다) 규모 및 정도
2.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내용 및 정도, 그 유통의 기간 · 횟수, 전파의 정도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라 부과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5. 해당 정보가 이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되어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6. 해당 정보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7. 해당 정보의 본문 또는 전체 내용과 명백히 다른 내용의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하였는지 여부
8.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금품

또는 부당한 조치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9. 가해자의 재산상태

10. 가해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11.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⑤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정보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피용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피용자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로서 제44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⑦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의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판결의 선고 시 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⑥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⑦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공직 선거법」 제2조에 따른 공직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절차,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및 제7항에 따른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⑩ 공인등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하여 제5항에 따라 각하될 경우 법원은 공인등에게 피고가 입은 소송절차 대응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

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2.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3.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4.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5.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6.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7. 신고의 기각
 8.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 ④ 신고인이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

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⑧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44조의13(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제출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 대해 사전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제4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4조의12제6항에 따라 수립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일정 기간 동안 명백히 근거 없이 신고하였다고 판단된 신고의 수
2.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제공된 정보 또는 신고된 정보의 전체 건수 중 신고비율
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성격과 신고 남용의 결과가 피해자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4. 신고자의 의도

제44조의14(투명성 보고서의 공표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2.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른 분류와 각 신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
 3. 제44조의1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처리의 건수 및 결과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명령이나 권고에 따른 조치
 5. 그 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약관, 정책 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한 정보의 유형, 건수, 조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

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의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평균 이용자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44조의12에 따른 신고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

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4조의16(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이하 이 조에서 “허위정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대한 자율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제공자는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와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체결한 협약은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실확인 단체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대규모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에 관하여 사실확인된 정보,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제1항의 허위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을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실확인의 범위, 보고서의 공개방법,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의 공표 방법, 협약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제44조의16에 따른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 센터(이하 “투명성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2.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4.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제5장에 제44조의19부터 제44조의2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9(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44조의18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4조의20(분쟁의 조정) ①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분쟁조정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의뢰받은 분쟁조정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나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4조의21(자료요청 등) ① 분쟁조정부는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청

할 수 있고,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22(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부는 제44조의20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쟁조정부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 및 각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을 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4조의23(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부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부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제44조의7제1항의 불법정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4조의10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5(의견제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의26(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

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처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5를 삭제한다.

제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천만원”을 “7천 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73조제5호 중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을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76조제3항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5호의 중 “제64조의5제1항”을 “제44조의14제2항”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보고서”로 한다.

4의5. 제4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정보, 조작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쟁조정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 및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는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분쟁조정부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행한 행위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행위는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행위나 분쟁조정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법원에 의하여 제4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제7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70조제2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①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 <u>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u> ”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u><신 설></u>	3의3. “ <u>게재자</u> ”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u>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u> 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 -----직접 제공하거나 게재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를----- -----.
5. ~ 13. (생 략) ② (생 략)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	5.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

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할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구) ① -----

주장하는 자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정보(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불법정보를--
-----.

1. (현행과 같음)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
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
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신 설>

3. ~ 9. (생 략)

<신 설>

2. -----
-----거짓의 사실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 국가 ·
지역 · 성별 · 장애 · 연령 · 사
회적 신분 · 소득수준 또는 재
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
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
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
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
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3. ~ 9.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타인의 인격권이
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
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

<p>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p> <p>3. (생략)</p> <p>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⑤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p>		<p>-----</p> <p>-----</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p> <p>-----</p> <p>3. (현행과 같음)</p> <p>⑤ ----- 제3항 및 제4항에-----</p> <p>-----</p> <p>-----</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⑥ -----</p> <p>-----</p>
---	--	---

<p>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u>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u></p>	<p>1. <u>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u></p>
<p>2. ~ 4. (생략)</p>	<p>2. ~ 4. (현행과 같음)</p>
<p><u><신설></u></p>	<p><u>제44조의10(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u> <u>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유통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u></p>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을 말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계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계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제44조의7제1항의 불법정보 또는 제2항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2.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3.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
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원고
외의 자가 입은 피해도 포함
한다) 규모 및 정도

2.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의 유통으로 가해자가 취득
한 경제적 이익

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의 내용 및 정도, 그 유통의
기간·횟수, 전파의 정도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의 유통에 따라 부과된 형사
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5. 해당 정보가 이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되
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6. 해당 정보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정보도가 이루어
진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
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
통하였는지 여부

7. 해당 정보의 본문 또는 전체

내용과 명백히 다른 내용의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
하였는지 여부

8.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의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
에게 금품 또는 부당한 조치
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9.加害자의 재산상태

10.加害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11.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⑤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공익침해 행위와 관

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정보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피용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피용자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로서 제44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⑦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의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

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 설>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른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⑥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⑦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공직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이하 “공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절차,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및 제7항에 따른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⑩ 공인등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하여 제5항에 따라 각하될 경우 법원은 공인등에게 피고가 입은 소송절차 대응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 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 설>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
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
는 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
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
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
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
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
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
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
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
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
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

차단, 정보노출 제한

2. 계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
지

3.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4.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
수 등 제한

5.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지 또는 종료

6.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7. 신고의 기각

8.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
에 따른 조치

④ 신고인이나 계재자는 제3항
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신고자 또는 계재자는 대규
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
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

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8)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신 설>

제44조의13(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제출하는 등 신고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 대해 사전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제4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4조의12제6항에 따라 수립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일정 기간 동안 명백히 근거 없이 신고하였다고 판단된 신고의 수

2.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제공된 정보 또는 신고된 정보의 전체 건수 중 신고비율

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성격과 신고 남용의 결과가 피해자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4. 신고자의 의도

제44조의14(투명성 보고서의 공표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2.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

<신 설>

정보의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른 분류와 각 신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

3. 제44조의1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처리의 건수 및 결과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명령이나 권고에 따른 조치

5. 그 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약관, 정책 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한 정보의 유형, 건수, 조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

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평균 이용자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44조의12에 따른 신고와 제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16(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이하 이 조에서 “허위정보등”

이라 한다)의 처리에 대한 자율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제공자는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와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체결한 협약은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실확인 단체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대규모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에 관하여 사실확인된 정보,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제1항의 허위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을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실확인의 범위, 보고서의 공개방법,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의 공표 방법, 협약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제44조의16에 따른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이하 “투명성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2.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p><u>3.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u></p> <p><u>4.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u></p> <p><u>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u></p>
<u>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u>	<p><u>제44조의18(분쟁조정부) ①</u> ----- ----- ----- ----- ----- ----- <u>정보, 제44조의12제3항의 조치 또는 같은 조제4항의 이의신청 결정과</u> ----- ----- ----- <u>9명 이상 20명</u> ----- <u>분쟁조정부를 둔다.</u></p> <p><u>② 제1항의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u> <u>이 경우 각 호의 위원은 각각 위원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u></p> <p><u>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u></p>
<u><신 설></u>	

<p><u><신 설></u></p>	<p><u>2.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u></p>
<p><u><신 설></u></p>	<p><u>3. 언론사의 취재 · 보도 · 제작 업무(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취재 · 보도 · 제작 업무를 포 함하여야 한다)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u></p>
<p><u><신 설></u></p>	<p><u>4. 그 밖에 정보통신망 또는 언 론에 관하여 학식이나 전문성 이 인정되는 사람</u></p>
<p><u>(3)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 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 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 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 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 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u></p>	<p><u><삭제></u></p>
<p><u>(4)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 치 ·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 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4) 분쟁조정부의 ----- ----- ----- -----.</u></p>
<p><u><신 설></u></p>	<p><u>제44조의19(위원회의 제척 · 기피 ·</u></p>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44조의 18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20(분쟁의 조정) ①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분쟁조정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의뢰받은 분쟁조정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나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제44조의21(자료요청 등) ① 분쟁

조정부는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22(조정의 효력) ① 분쟁

조정부는 제44조의20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자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쟁조정부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 및

각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
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
명날인을 하면 당사자 간에 조
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
립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44조의23(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부는 분쟁의 성질
상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부는 신청된 조정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
하던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
(訴)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
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
게 알려야 한다.

<신 설>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
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제44조의7 제1항의 불법정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4조의10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5(의견 제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26(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

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국세처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

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

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 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 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 에 관한 사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투
명성 보고서를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투
명성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
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
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제70조(별 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
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제70조(별 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드러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u>5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u>7천만원</u>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u>
제73조(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별 칙)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5. <u>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에-</u> -----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7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6조(과태료) ③ ----- ----- -----.
1. ~ 4의4. (생 략)	1. ~ 4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5. ~ 24. (생 략)

25.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자

④ (생 략)

4의5. 제44조의6제1항을 위반하

여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
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
니한 자

5. ~ 24. (현행과 같음)

25. 제44조의14제2항-----
-----보고서를-----

④ (현행과 같음)